주택취득의 개념

납부대상자

과세대상 금액 (과세표준) • 주택 :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

• 취득 : 유상취득인 매매와 무상취득인 상속 · 증여, 원시취득인 신축 · 증축 등을 모두 포함

• 주택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며, 등기 ·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취 득한 경우 납부대상자가 됨

• 취득 당시의 가액. 단, 취득자가 신고한 가격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시가표준액을 적용

\* 단독·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시가격 없는 경우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

〈표준세율〉

		(표군시)	三/		
과세표준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6억 0	6억 이하		0.1%		
	6.5억	1,33%			
	7억	1.67%		-10-11-1	
6억 초과	7.5억	2.0%	0.1- 0.20	전용면적	
9억 이하	8억	2,33% 0.1~0.3%		85㎡초과 시 0.2% 과세	
	8.5억	2.67%		0.20 되시	
	9억	3.0%			
9억 초과 원시취득(신축), 상속* 무상취득(증여)		3.0%	0.3%		
		2.8%	0.16%	0.2%	
		3,5%	0.3%	0.2%	
the same was view — terrans	and the second second		Commercial and the commercial control of the control of the commercial control of the commercial control of the control of the commercial control of the control of the commercial control of the commer		

\* 무주택 가구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0.8% 세율 적용

〈다주택자·법인 등 중과세율〉

취드 네		무상취득			
취득세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법인	(3억이상)
조정지역	1~3%	8%	12%	12%	12%
非조정지역	1~3%	1~3%	8%	12%	3,5%

• 지방교육세 : 중과분(8% 및 12%) 모두 0.4%

• 농어촌특별세 : 8%중과분 0.6%, 12%중과분 1%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감면

세 율

신고방법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 한해 '23,12,31,까지 취득세 감면 \* 취득가액 1.5억원 이하시 면제하고, 1.5억원 초과시 50% 경감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 (첨부서류)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분양받은 경우)분양계 약서, 잔금납부 영수증 등

# 2 주택분 재산세 요약표

과세대상	• 「주택법」에 따른 주택과 그 부속토지         구분       주택의 세부 종류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납부대상자	• 과세기준일(매년 6	월 1일) 현재	과세대상 주택	을 사실상 소	유하고 있는 자				
과세대상 금액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sup>1)</sup> 에 공정시장가액비율 <sup>2)</sup> 을 곱한 금액 1) 단독·공동주택 공시가격 2) 60%							
	• 주택	ŭ.		(g)					
	과표	(공시가 9	· 세율 9억 초과 • 자 • 법인)		세율 이하 1주택자)				
	0.6억 이하		0.1%		0.05%				
세율	0,6~1,5억 이하	0.6억 결	6.0만원+ 초과분의 0.15%	3.0만원 + 0.6억 초과분의 0.1%					
	1,5~3억 이하	1.5억 결	19,5만원 + 호과분의 0,25%	12.0만원 + 1.5억 초과분의 0,2%					
	3~5.4억 이하	3.0억	57,0만원+ 초과분의 0.4%	42,0만원+ 3.0억 초과분의 0.35%					
	5.4억 초과		7-37-5-37-5-30-5-31-1-31-1-3-1-3-3-3-3-3-3-3-3-3-3-3-3	-					
	• 별장 : 4%								
	• 주택 공시가격(시기	h표준액)에 따	라 세부담상한	적용					
	77 117174		개인 소유		HIOL I O				
세부담상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6억원 초과	법인 소유				
	세부담상한 비율	105%	110%	130%	150%				
납부기간	• 세액의 1/2은 7.16.~ 7.31., 나머지 1/2은 9.16.~ 9.30.까지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납부								
재산세 도시지역분	• 도시지역 중 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고시지역 내 주택에 대해 재산세 도시 지역분을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할 수 있음 • 세액: 재산세 과세표준에 0.14% 세율을 적용한 금액								
지방교육세	• 재산세 납부할세액	의 20% 상당	액을 지방교육	세 납부					
지역자원 시설세	•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 지역자원 시가표주액(거추무) × 고정시작가액비용(60%) × 세육								

### 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요약표

#### 과세대상

•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 다만 별장은 제외

#### 납부대상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국내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

\*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 법인은 공시가격 전체에 대해 과세(공제 배제)

#### 과세대상 금액 (과세표준)

- { (∑ 인별 주택 감면후\* 공시가격) 6(11)억원}×공정시장가액비율
- \* 재산세 감면주택의 경우 감면비율만큼 공시가격에서 차감

# 세 율

	잍	반(2주택 이히	<del> </del> )	3주택 등 <sup>1)</sup>			
과세표준		개인	법인 <sup>2)</sup>		HO(2)		
	세율	누진공제	립인	세율	누진공제	법인2)	
3억원 이하	0.6%			1.2%		6%	
6억원 이하	0.8%	60만원		1.6%	120만원		
12억원 이하	1,2%	300만원	20/	2,2%	480만원		
50억원 이하	1,6%	780만원	3%	3.6%	2,160만원		
94억원 이하	2.2%	3,780만원		5.0%	9,160만원		
94억원 초과	3.0%	11,300만원		6.0%	18,560만원		

- 1) 3주택 이상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 2) 법령에서 정하는 공공주택사업자 건설임대주택사업자 등은 일반 누진세율 적용

### 세부담상한

• 보유주택 현황에 따라 세부담상한 차등 적용(개인만 적용, 법인 제외)

## 세무남상한

공시가격일반1 · 2주택조정2주택3주택 이상세부담상한 비율150%300%300%

#### 신고 · 납부 기간

• 12.1~12.15. 기간 중 종합부동산세 납부 다만, 같은 기간 중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됨

합산배제 매입임대 주택

- 구 분
   임대기간
   임대호수
   공시가격

   18.3.31. 이전 등록
   5년 이상
   6억원 이하

   18.4.1. 이후 등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10년 이상
   1호 이상
   (비수도권 3억원 이하)
- \*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취득한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를 받을 수 없음

#### 농어촌 특별세

•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의 20% 상당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

## 4 주택임대소득세 요약표

		I	마세요건[주	택수(부부힡	산) 기	[준]				
		주택수		월세		보증금 등				
2000 1000		1주택		비과세 <sup>1)</sup> 간주임대료						
과세		2주택		과세		과세제외				
대상자	3	주택 이상		파시		간주임대료 <sup>2)</sup> 과세				
		가(공시가격) 9								
				아이면서 기준	실시가 2	2억원 이하)은 간주임대료 과				
	세대장	주택에서 제외								
그나네	수	입금액			과세빙					
과세 방법	2천만	<u></u> 원 초과		다른 소득과	바 합산	하여 종합과세				
08	2천만	<u> </u> 원 이하		종합과세외	바 분리	과세 중 선택				
	즈태이	대 수입금액	월세 + 간	즈이대리						
	주택임대	대 필요경비	장부기장 : 실제지출 추계신고 : 경비율 이용							
	주택임대	대 소득금액	수입금액 – 필요경비							
	종합	소득금액	주택임대 소득금액+종합과세 대상 다른 소득금액							
종합과세 계산방법	소	득공제	인적공제 등							
계인공답	과	세표준	종합소득	금액 – 소득	공제					
		세율	6 ~ 45%							
	-	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							
		감면세액		주택 세액긷		함				
	결	정세액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구분	수입금액	필요경비	공제금액	세율	소형임대주택 세액감면				
분리과세	등록	월세 +	60%	4백만원		단기(4년) 30(20)%				
계산방법	- <del> </del>	결제 + 간주임대료	00 /6	M. Standard	14%	장기(8(10)년) 75(50)%				
	미등록	L10-11-	50%	2백만원		-				
	• 세무서오	사 지자체 모두	등록하여	4년[장기일	J반 8(	10)년 <sup>1)</sup> ] 이상 임대한 자에				
소형주택		0)%[장기일반								
임대	0.050000000000				기준.	시가 6억원 이하				
사업자 세액감면		보증금 • 임대: 18. 이후 등록			7]7F 10	าเส				
MINOL	90					20%(단기)·50%(장기)				
신고납부		생한 다음 연	M. 90055 3							
지방소득세	Established to the second					HELD STEEDING				
시앙오국제	꼬득세 딥	소득세 납부할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								

### 5 양도소득세 요약표

양 도

•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함 \* 부담부증여 시 수중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봄

주 택

•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름

양도차익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장기보유 특별공제

1세대 1주택 이외	1세대 1주택(공제율 : 보유기간 + 거주기간)				
토지・건물	보유기간	거주기간			
3년 이상 ~ 15년 이상	3년 이상 ~ 10년 이상	3년 이상*~ 10년 이상			
6% ∼ 30%	12% ~ 40%	12% ~ 40%			

\*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거주기간이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8% 적용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기본공제

#### (기보 세육)

V-1C-11E/		
과세표준	기본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del>-</del>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 〈다주택자 등 중과세율〉

세 율

7	н	세	율
구 분		'21.5.31. 까지	'21.6.1. 이후
	2주택자	기본세율 + 10%	기본세율 + 20%
	3주택 이상자	기본세율 + 20%	기본세율 + 30%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분양권	50%	1년 미만:70% 1년 이상:60% (조정대상지역 내·외 구분없음)
	1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	40%	70%
주택 보유기간별	1년 이상 2년 미만 주택·조합원입주권	기본세율	60%
	2년 이상 주택·조합원입주권	기본세율	기본세율
미등	기 양도주택	70%	70%

# 6 증여세 요약표

과세대상	<ul> <li>주택을 생전에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li> <li>주택의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li> <li>주택의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li> </ul>						
납세의무자	• 타인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자(수증자)에게 부과 다만, 거주자가 국외주택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면 증여자에게 부과						부과
신고·납부기한		• 주택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 * 주택을 취득한 날: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등록신청서 접수일					
과세표준	• 증여재산기	가액 – 채무	부담액+	증여재산기	'\산액 – 증(	<b>겨재산공제</b>	등
증여재산가액 (재산 평가)	<ul> <li>주택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 에 따름</li> <li>☆ (1순위) 평가대상의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이내 매매, 감정 등</li> <li>☆ (2순위) 유사대상의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 이내 매매, 감정 등</li> <li>* 평가기간 외의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또는 증여세 신고 기한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감정 등이 있는 경우 평가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 가능</li> <li>*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 활용</li> <li>☆ (3순위) 지자체장, 국토부장관이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 가격</li> </ul>						
증여재산가산액	• 주택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세 과세가역 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가액 가산 * 동일인에는 중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					과세가액	
	증여자	배우자	직기	세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	그 외
증여재산공제	공제 한도액	D일원 5선만원 1선만원					없 음
		과세표준		人	율	누진공	제액
	1억원 이하 10% -						
세율	1억원 최	도과 5억원	이하	2	0%	1천만원	
\"e		과 10억원	100000000	30%		6천민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40% 50%		1억 6천만원 4억 6천만원	
						70	100
세액공제	• 납부세액공					100.111.1	
법정결정기한	•세무서장 월 이내에				는은 경우 신 나, 수증자에		부터 6개

<sup>&</sup>lt;sup>↑</sup>※ 자료출처 : 행안부·국세청 「2022 주택과 세금」 책자

### 7 상속세 요약표

과세대상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납세의무자	• 상속으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 • 유증 • 사인증여를 받은 자(수유자) 등							
신고·납부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	일부터 6개월 이내 신	l고·납부					
과세표준	• 상속재산가액 + 사전증여재산 공제	- 비과세, 공과금, 채역	무, 장례비용 등 - 상속					
상속재산가액 (재산 평가)	<ul> <li>○ (1순위) 평가대상의 상속개</li> <li>○ (2순위) 유사대상의 상속개</li> <li>* 평가기간 외의 기간으로서 한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 중 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에 되</li> <li>•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li> </ul>	<ul> <li>주택의 가액은 상속일 현재 시가 에 따름</li> <li>☆ (1순위) 평가대상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매매, 감정 등</li> <li>☆ (2순위) 유사대상의 상속개시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 내 매매, 감정 등</li> <li>* 평가기간 외의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또는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감정 등이 있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 가능</li> <li>•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 활용</li> <li>☆ (3순위) 지자체장, 국토부장관이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li> </ul>						
사전증여재산	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 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     중여시점에 이미 납부한 중여세 상당액은 중여세액공제 적용						
상속공제	• (기초공제 + 그 밖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 중 큰 금액 • 배우자공제(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 5억원 공제) •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 * 단, 위 합계 중 공제적용 종합한도 내 금액만 공제 가능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121					
세율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시1년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네애고제	• 즈어 세애고제 이그나브 세애고	제 시구비애고제/3%	\ <b>=</b>					

세액공제

법정결정기한

- 증여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3%) 등
- •세무서장 등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상속인에게 통지